

서 면 답 변 서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농업기술센터를 지역에 맞는 특화 연구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|
|---|

□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근거 및 조직, 기능은

-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 제3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된 기관임
-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에 농촌진흥청과 각종 연구원, 연구소가 있으며 도에는 농업기술원과 관계 시험장 등 연구기관이 11개소가 있음
- 농업기술센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지도직으로서 연구·시험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

□ 질문하신 특화연구기관으로서 전환은

- 우선 전면적인 개편은 농촌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함
-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은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연구가 필요한 특화작목이나 신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 전환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
- 그 전 단계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도 인삼,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을 담당할 팀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